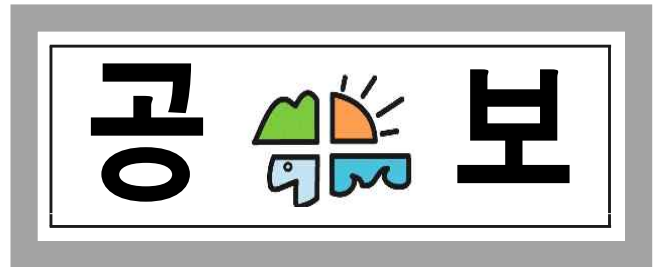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031호 2016년 11월 21일(월)

조 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4
-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8

규 칙

-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정비 규칙 31

공 고

- 속초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35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503 호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단에는”을 “공단의 임원은”으로, “감사를 두며”를 “감사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이사”를 “임원”으로, “하되”를 “하며,”로, “연임 할”을 “연임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호 중 “화장장·봉안당”을 “장사시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사업년도”를 “매사업연도”로, “당해 사업년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한다.”를 “하며,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못한 때”를 “못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5조 중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바로잡고 공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책임경영을 통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504 호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관학협의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대학교·대학·단과대학을”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로 한다.

제2조(「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광과장, 속초발전추진단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속초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속초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속초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여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환자금 조달 계획서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제5조(「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조(「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이하“시”라 한다)”를 “속초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강원도 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국가가 지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25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8조(「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조례, 규칙 등은”을 “조례는”으로 한다.

제9조(「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 및 법 제28조의2는 제외한다.

제8조의2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9조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의 개정)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를 “속초시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제11조(「속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속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속초시장래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장래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장래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속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교동 1073-64번지”를 “원암학사평길 62”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13조(「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14조(「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한다.

제15조(「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호적·주민등록업무”를 “주민등록 업무”로 한다.

제17조(「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을 “동계패럴림픽을”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3회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를”을 “제12회 동계패럴림픽을”로 한다.

제18조(「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되, 특정성별 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1. 속초시의회 의장
2. 속초경찰서장
3.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4. 속초소방서장
5.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6.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계되는 사람
7.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해임되었을 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20조(「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제1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속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속초시의회 의원”로 한다.

제10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제18조 중 “웹 표준”을 “호환성”으로 한다.

제21조(「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인터넷시스템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3구좌”를 “3계좌”로 한다.

제7조 중 “희망하는 자는”을 “희망하는 사람은”으로, “입사신청서에 의거”를 “입사신청서를”로 한다.

제23조(「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24조(「속초시문화상조례」의 개정) 속초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문화상조례”를 “속초시 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본적읍”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제25조(「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문농

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체육 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27조(「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28조(「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영랑 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시설관리운영조례”를 “속초시 영랑호 화 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준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속초시공유 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속초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제30조(「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한다.

제31조(「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을 “계약직”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2조(「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중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3조(「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34조(「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속초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5조(「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

제36조(「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법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중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아동위원회 운영 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제8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40조(「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청소년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를 따른다.

1. 속초시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3. 속초설악고등학교장
4. 속초여자고등학교장
5.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6. 교육전문자
7.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1조(「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로 한다.

제3조 중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를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로 한다.

제42조(「속초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3조(「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중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

제44조(「속초시 보육 조례」의 개정)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4호, 제14조제4호, 같은 조 제7호,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및 제17조제3항 중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보육시설 폐쇄 등)”을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한다.

제26조 중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5조(「속초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의 개정) 속초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9조 및 제35조”를 “법 제28조 및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3조 및 제74조”를 “법 제81조 및 제8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액화 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를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로 한다.

제49조(「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0조(「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속초시의회 의원

제51조(「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4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위원의 기피)”를“(위원의 제척)”으로 한다.

제54조(「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55조(「속초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속초시공유재산조례”를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준용)”을“(다른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56조(「속초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속”를 “속초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농공지구”를 각각 “농공단지”로 한다.

제57조(「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각각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58조(「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59조(「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호 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10조 중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0조(「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1조(「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준용”을 각각 “적용”으로 한다.

제62조(「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속초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5항 중 “부당이득금”을 각각 “변상금”으로 한다.

제63조(「속초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9호, 제4조, 제5조,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4조(「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라고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65조(「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의 개정)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를 “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8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7조(「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속초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와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8조(「속초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9조(「속초시공수의여비조례」의 개정) 속초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수의여비조례”를 “속초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70조(「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의 개정)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정액표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3호”로 한다.

제71조(「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속초시의회 의원 2명

제72조(「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속초시의회 의원 1명

제73조(「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74조(「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5조(「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의 개정)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를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제11조 중 “규정에 따른”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규정 관련”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76조(「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신흥길”을 “신흥2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3호 중 “「아동복지법」 제5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7조(「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8조(「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지원계획)”을“(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9조(「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80조(「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속초시의회 의원

제10조제1항 중 “통할 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건설산업업무”를 “건설행정업무”로 한다.

제81조(「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속초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만취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2조(「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제3조제3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를 “(위원의 기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심의안전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83조(「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전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을 “하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심의안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을 “대립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84조(「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을 “건물번호판”으로 한다.

제1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회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5조(「속초시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속초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속초시지명위원회조례”를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속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

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지명업무담당”으로,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를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를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6조(「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법제처 자율 정비 대상으로 발굴된 조례 중 단순 정비 대상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신속하게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임이고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505 호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영업장소의 시설관리주체의 공급 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을 확대하여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속초시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 1366 호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보건소,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동주민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를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건설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방재과, 공원녹지과

제2조(「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을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을 “속초시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속초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을 “속초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속초시 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속초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 주사가”를 “문화예술 업무 담당이”로 한다.

제6조(「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제8조(「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실·과·단·소”를 각각 “실·과·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한다.

제9조(「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자를”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자”를 “신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를 “별표 1을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0조(「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1조(「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호서식 및 별표 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일부개정이 필요한 규칙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신속하게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임이고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속초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속초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8.

속 초 시 장

1. 공고목적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2. 공람내용
 - 어린이공원 1개소, 1,527㎡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4. 공람장소 : 속초시청 공원녹지과(033-639-2422)
5.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